



제 433회 국회 (임시회)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신 · 재생에너지의 수요 · 공급에 관한
통계자료 잠정치 공개 등〉

■ 김한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8277호)

2026. 3.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한규의원 등 18인
2. 제 안 일 : 2025. 2. 19.
3. 회 부 일 : 2025. 10. 2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신·재생에너지 관련 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국내외 신·재생에너지 수요·공급에 관한 통계자료를 조사·작성·분석 및 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법령에서는 통계자료의 공개와 공개시기에 관하여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여 전년도 자료가 다음연도 말에 공개됨에 따라 기술의 진보에 따라 시시각각 변화하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등 전 세계적인 시장 흐름에 뒤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통계자료를 신속히 분석·발표하도록 공개와 공개 주기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 보급 환경의 신속한 파악으로 데이터 기반 정책결정 및 민간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3항·제4항 신설).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¹⁾으로 하여금 신·재생에너지의 수요·공급에 관한 통계자료의 잠정치를 해당연도의 분기별로 공개하고, 그 잠정치를 분석·검증한 결과를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3항·제4항 신설).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5조(관련 통계의 작성 등) ① · ② (생략) <신설>	제25조(관련 통계의 작성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내외 신·재생에너지의 수요·공급에 관한 통계자료의 잠정치를 해당 연도의 분기별로 공개하고, 그 잠정치를 분석·검증한 결과를 다음연도 6월 30일까지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④ 제3항에 따른 통계자료의 범위, 분석, 검증 및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법 제25조는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이용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내외 신·재생에너지의 수요·공급에 관한 통계자료를 조사·작성·분석 및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²⁾

1) 정부조직개편('25.10.)에 따라 개정안의 내용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통계 전문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는 총 11개 신·재생에너지원(25개 세부분야)을 생산·이용·판매하는 공공기관, 민간사업자 등의 자료를 수집, 검증 및 분석해 최종 통계결과를 작성하고 있음.

[재생에너지 통계자료 조사 개요]

에너지원	조사 타입 구분	주요 조사항목
태양광, 풍력, 수력, 해양, 연료전지, IGCC	주로 전력을 생산하는 에너지원	설비타입, 총용량, 총발전량 등
태양열, 지열, 수열	주로 열을 생산하는 에너지원	
바이오 및 폐기물 에너지	신·재생에너지를 연료로 열 또는 전기를 생산하는 에너지원	시설·운영현황, 연료투입, 열·전기 생산량, 판매량, 소비량 등
바이오디젤, 성형숯, 숯, 수소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판매하는 에너지원	연간 총생산량, 연간 총판매량 등

자료: 기후에너지환경부

그러나 현행법에는 통계자료의 공개 시기와 절차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전년도 자료가 다음 연도 말에야 공개되는 실정으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5조(관련 통계의 작성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국내외 신·재생에너지의 수요·공급에 관한 통계자료를 조사·작성·분석 및 관리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제11조제1항에 따른 기관이나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생산자·설치자·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성이 있는 기관을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조사·작성·분석 및 관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게 할 수 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14조(신·재생에너지 통계의 전문기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통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성이 있는 기관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한다

로,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환경이 신속히 반영되지 못하고 정책 결정과 민간산업 대응이 지연된다는 지적이 있음.

한전과 전력거래소도 통계자료를 제공하고 있기는 하나, 월별로 사업용 발전량과 전기 설비용량에 한정하여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용량과 발전량에 관한 잠정치 등을 공개하고 있어³⁾ 신·재생에너지 관련 현황에 대한 최신 동향을 파악할 수 있을 뿐 정확한 수치 제공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개정안은 신·재생에너지 관련 통계자료의 신속한 공개를 통해 데이터 기반의 정책 결정과 민간산업 발전을 촉진하려는 취지로 보임.

개정안과 같이 국내외 신·재생에너지의 수요·공급에 관한 통계자료의 잠정치를 분기별로 공개한다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환경의 신속한 파악으로 데이터 기반 정책결정 및 민간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신·재생에너지 통계자료의 잠정치를 공개하는 것이 통계 이용자에게 혼선을 초래하고 통계 신뢰성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으며, 최종 통계결과에 포함되어야 할 필수적인 대외기관의

3) 태양광, 풍력, 수력, 바이오, 해양, IGCC, 연료전지의 발전설비 용량 및 발전량 정보(잠정치)를 공개

자료가 6월 이후부터 공개되기 때문에⁴⁾ 이를 바탕으로 통계 작성에 소요되는 시간까지 고려하면 개정안에서 정한 시점(다음연도 6월 30일)까지 결과를 공개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533

4) 통계결과에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는 한국전력통계(5~6월), 자가용 설비조사에 필요한 상용자가발전업체조사(7월), 바이오에너지 관련 임산물 생산조사(10월) 등의 대외기관 자료는 6월 이후부터 공개되고 있음.